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세 무2과-30863
등록일자	2015.9.8.
결 재 일 자	2015.9.8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2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
조삼숙	윤미라	김광수	전결 09/08 <b>김용운</b>	
협조자				



Gang Nam -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등록에 따른 -

# 개인 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부과 계획

#### ■ 추진배경

- 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 등록 완료
- 통보자료와 납부내역 상호대사 및 금액 매칭자료 1대1 매칭
- 미납부자 · 과소납부자 즉시 과세로 **과세의 골든타임 확보**
- O 수시과세시 가산세 부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

#### ■ 통보현황

O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확정신고분 현황

(단위·건 / 백만위

								<u>-'''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1 - 1	
총 계		신고	1납부	미납부		일괄환급		2,000원 미만	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	105,424	127,437	54,445	120,413	6,027	4,757	26,152	2,265	18,800	2

#### □ 추진사항

- O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
  - 기간: 2015. 9. 1. ~ 2015. 10. 10
  - 미납부자 및 과소납부자 가산세 포함 수시분 부과 처리
  - 납세지 착오납부건 건별 지자체간 세입이체 처리

2015. 9. 8.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지방세법시행령 제95조【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】							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· 신속한 수시 결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(종소) 징수율 제고							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							
수 혜 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 • 해당사항 없음							
분 야 별 검토사항 〔계속: ○〕 〔신규: 〕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 ① 관련부서 협조							
타 기관 사 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25개 구청 공통사항							
전 문 가 자 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							

# -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등록에 따른 - **개인 지방소득세(종합소득) 부과 계획**

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전산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의 적정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·과소 납부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포함 즉시 과세를 통하여 과세의 골든타임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🔟 추진배경

- 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자료 등록 완료
- 통보자료와 납부내역 대사 및 미납부자 즉시 과세로 과세누락 방지
- O 수시과세시 가산세 부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확보

### Ⅲ 개 요

- O 납세의무자: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
- O 납 세 지: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
- 신고·납부기간: 2015. 5. 1. ~ 2015. 6. 1. (성실신고납세자 및 납기 연장신청자는 2015. 6. 30.까지)
- O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확정신고분 현황

(단위:건/백만원)

총 계		신고	1납부	미납부		일괄환급		2,000원 미만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105,424	127,437	54,445	120,413	6,027	4,757	26,152	2,265	18,800	2

#### Ⅲ 추진사항

- 국세청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1대1 상호매칭 및 과세대상자 발췌
  - 추진기간 : 2015.9.1. ~ 2015.10.10.
  - 국세청 통보자료와 납부자료 대사후 금액 매칭자료 1대1 연결
  - 신고납부자 정당세액 여부 확인후 과소납부자 수시분 부과 처리
  - 확정신고후 미납부자 수시분 부과 처리
- 납세지 착오납부분 지자체간 세입경정 처리
  - 타시도에 잘못 납부한 경우 세입이체 요청후 세입처리
  - 타시도분 우리구에 착오납부한 경우 정당 납세지에 세입이체

## ₩ 기대효과

- 신속한 과세로 납세고충을 더하는 기산세 부담 최소화
- 정확한 과세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형평성 확보

## ☑ 행정사항

- 타시도 착오납부자 관할 지자체에 세입경정 요청
- 결과보고: 2015. 10. 15.